|  |  |  |
| --- | --- | --- |
|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 시행에 관한**  **공고**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공고 [2012]  제27호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검사감독 관리를 보강하여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및 그 시행조례 등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 감독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2012년 6월 1일부터 집행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별첨: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  2012년 2월 27일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  **제1자 총 칙**  **제1조**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검사감독 관리를 보강하여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및 그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검사법》및 그 시행조례,《식품 등의 제품 안전 감독 관리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제도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설명서 포함)에 대한 검사와 감독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수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은 중국 관련 법률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표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수출 예비포장 식품에 라벨은 수입 국가(지역)의 관련 법률과 법규, 표준 또는 계약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수입국(지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 관련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표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에 대한 검사감독 관리 활동을 주관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방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구역 내의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에 대한 검사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수출입 식품 생산 경영업체는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이 이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와 공중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사회의 감독을 받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라벨 검사**  **제6조** 처음 수입하는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 검사를 신고하는 신고단위는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 하기 각 호에서 요구하는, 라벨 검사와 관련한 자료에 직인을 날인하여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중인 라벨 샘플과 번역문  (2) 예비포장 식품 중문 라벨 샘플  (3) 라벨에 기재한 수입업체,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의 공상행정 영업허가증 복사본  (4) 수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에서 강조한 내용, 이를테면 수상, 증서취득, 법정 생산지역, 지리표식 및 기타 내용이 있거나 또는 특수성분을 함유한 경우는 관련 증명자료, 영양성분 함유량을 표시한 경우는 이에 부합하는 증명자료  (5)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기타 증명서나 증명서류.  수출 예비포장 식품 검사신고 시에는 라벨 샘플과 번역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 규정 제3조 제2항 요구에 부합하는 성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검사검역기구는 라벨의 양식을 검사하는 동시에 라벨 내용의 부합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라벨 내용의 부합여부 검사는 따로 샘플링 검사를 하지 않고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에 대한 일상 검사 감독 활동에 결부하여 진행한다.  **제8조** 처음 수입하는 예비포장 식품 중문 라벨 검사에 합격된 경우 검사기구는 등록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9조** 수입 예비포장 식품 검사결과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라벨 불합격으로 판정해야 한다.  (1) 수입 예비포장 식품에 중문 라벨이 없는 경우  (2) 수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의 양식 검사결과 중국 법률, 행정법규, 규정제도 및 식품 안전표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부합여부 검사결과 라벨에서 제시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10조** 수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이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1회에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에 불합격 내용을 전부 고지해야 한다. 안전, 건강, 환경 등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에 명하여 소각하게 하거나 반품통지서를 제시하여 수입업체나 그 대리업체에서 반품수속을 하게 해야 한다. 기타 사항에 불합격인 경우 수입업체나 그 대리업체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할 수 있다. 기술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를 해서도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업체나 그 대리업체에 명하여 반품하거나 소각하게 해야 한다.  **제11조** 수출 예비포장 식품이 라벨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해야 한다. 기술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를 해서도 불합격인 경우에는 수출을 불허한다.  **제12조** 최초 수입당시 라벨검사에 합격한 예비포장 식품을 재차 수입하는 경우에는 라벨 등록증빙과 중문, 외국어 라벨 샘플만을 제공하며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나열한 증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검사검역기구는 라벨 검사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기록 보관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장 감독 관리**  **제14조** 국가질검총국은 정보 플랫폼을 통하여 수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활동을 관리하고 각 지방 검사검역기구는 구체적인 검사 작업을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된 수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을 등록한다.  **제15조**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에 합격되지 못했으나 기술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검사검역기구이 지정하거나 인가한 감독관리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인가 없이 이동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각지 검사검역기구는 라벨 검사 감독관리 활동에서 불합격 식품을 발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17조** 샘플, 선물, 기증품, 전시품 등에 사용하는 비무역 수출입식품, 면세경영(離島면세는 제외)에 필요하거나 또는 대사(영사)관의 자체용으로 하는 수입 식품, 그리고 외국주재 중국 대사(영사)관, 중국기업의 해외 주재원 등의 자체용 수출식품은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여행자가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우편, 속달 등의 형식으로 입국하는 수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9조** 유전자 전환식품의 라벨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0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关于实施《进出口预包装食品**  **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的**  **公告**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公告2012年第27号  为加强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保证进出口食品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等法律法规，国家质检总局制定了《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自2012年6月1日起执行。  特此公告。  附件：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  二〇一二年二月二十七日  **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  **管理规定**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的检验监督管理，保障进出口预包装食品质量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和《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等相关法律、行政法规、规章，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适用于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含说明书）的检验和监督管理工作。  **第三条** 进口预包装食品标签应当符合我国相关法律法规和食品安全国家标准的要求。  出口预包装食品标签应符合进口国（地区）相关法律法规、标准或者合同要求，进口国（地区）无要求的，应符合我国相关法律法规及食品安全国家标准的要求。  **第四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主管全国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工作。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简称检验检疫机构）负责所辖区域内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工作。  **第五条** 进出口食品生产经营者应当保证其所进出口的预包装食品的标签符合本规定第三条要求，诚实守信，如实提供相关材料，对社会和公众负责，接受社会监督，承担社会责任。  **第二章 标签检验**  **第六条** 首次进口的预包装食品报检时，报检单位除应按报检规定提供报检资料外，还应按以下要求提供标签检验有关资料并加盖公章：  （一）原标签样张和翻译件；  （二）预包装食品中文标签样张；  （三）标签中所列进口商、经销商或者代理商工商营业执照复印件；  （四）当进口预包装食品标签中强调某一内容，如获奖、获证、法定产区、地理标识及其他内容的，或者强调含有特殊成分的，应提供相应证明材料；标注营养成分含量的，应提供符合性证明材料；  （五）应当随附的其他证书或者证明文件。  出口预包装食品报检时，应提供标签样张及翻译件，并提供符合本规定第三条第二款要求的声明。  **第七条** 检验检疫机构应当对标签进行格式版面检验，并对标签标注内容进行符合性检测。  符合性检测与进出口预包装食品的日常检验监督工作结合进行，不作单独抽样。  **第八条** 首次进口的预包装食品，其中文标签经检验合格的，由施检机构发给备案凭证。  **第九条** 经检验，进口预包装食品有以下情形之一的，应判定标签不合格：  （一）进口预包装食品无中文标签的；  （二）进口预包装食品的格式版面检验结果不符合我国法律、行政法规、规章及食品安全标准要求的；  （三）符合性检测结果与标签标注内容不符的。  **第十条** 进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不合格的，检验检疫机构一次性告知进口商或者其代理人不符合项的全部内容。涉及安全、健康、环境保护项目不合格的，由检验检疫机构责令进口商或者其代理人销毁，或者出具退货处理通知单，由进口商或者其代理人办理退运手续。其他项目不合格的，进口商或者其代理人可以在检验检疫机构的监督下进行技术处理。不能进行技术处理或者技术处理后重新检验仍不合格的，检验检疫机构应当责令进口商或者其代理人退货或者销毁。  **第十一条** 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不合格的，应当在检验检疫机构的监督下进行技术处理；不能进行技术处理或者技术处理后重新检验仍不合格的，不准出口。  **第十二条** 对于首次进口并经标签检验合格的预包装食品再次进口时，仅需提供标签备案凭证与中外文标签样张，免于提供第六条第（一）款3-5项证明材料。  **第十三条** 检验检疫机构应记录标签检验情况，并归档保存，档案保存期限不少于2年。  **第三章 监督管理**  **第十四条** 国家质检总局利用信息化平台，对进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工作实施管理，各地检验检疫机构负责具体实施并对检验合格的进口预包装食品标签进行备案。  **第十五条** 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不合格但可以进行技术处理的，在重新检验合格之前，应继续在检验检疫机构指定或者认可的监管场所存放，未经允许，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动用。  **第十六条** 各地检验检疫机构在标签检验监督管理工作中，发现不合格的，应按照相关规定上报国家质检总局。  **第四章 附 则**  **第十七条** 进出口用作样品、礼品、赠品、展示品等非贸易性的食品，进口用作免税经营（离岛免税除外）的、使领馆自用的食品，出口用作使领馆、我国企业驻外人员等自用的食品，可以申请免予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  **第十八条** 旅客携带入境及通过邮寄、快件等形式入境的进口预包装食品标签管理按有关规定执行。  **第十九条** 转基因食品的标注应符合国家有关法律、法规的规定。  **第二十条** 本规定自2012年6月1日实施。 |